

법정윤리교육



과정의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교육(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)으로 건설제도 등 건설업 관련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함양 제고 ■ 원하도급자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
교육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호협력평가 신청업체 임직원(업무실무자, 현장 실무자 등) ※신청업체 임직원 교육 참여시, 이수실적 3배수 인정 ■ 협력업체 임원
연간일정	연중(1-12월)
교육시간	1일 8시간
교육비용	150,000원 ※교재비, 중식대 포함 / VAT없음



과정 세부일정

구분	시간	교과명	세부내용
1일차	2	건설산업기본법	건산법에 규정된 과목
	1.5	계약법령	
	1	하도급법	
	2	건설공사 품질안전	
	1.5	윤리경영	

「상호협력평가」를 위한

「협력업체 교육지원 프로그램」

상호협력평가
‘협력업체 교육지원 인정범위’ 에

**건설업 윤리 및
실무교육(법정윤리교육)이
추가되었습니다.**

- 기존 -
상호협력
위탁교육

+

- (추가) 새로 적용 -
‘법정윤리교육’



“법정윤리교육”이란?

☑ 건설산업 전반에 원하도급자간 불공정거래 방지와
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**법정윤리교육***이
상호협력 평가요소로 도입 되었습니다.
(*20년 평가분부터 적용)

※법정윤리교육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교육

☑ 신청업체(종합건설업체) 임직원도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

→ 이수시 실적 3배수 인정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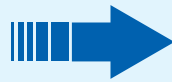
상반기 중 이수시 1.2배수 중복 인정

→ 최대

3.6배수 인정

법정윤리교육 참여 대상

신청업체 소속 임직원 OR 협력업체 임원



전체 참여인원수



X

**최대
3.6배 인정**

[왜 “법정윤리교육” 일까?]

ONE

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기관에서만
법정윤리교육이 가능합니다.
(대한건설협회 등 6개 기관)



TWO

종합건설업체 임직원도
이수할 수 있습니다.



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교육으로
검증된 교육과정, 건설업 직무능력 함양 제고!!

☑ 우리협회 교육시,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동 교육지원
관련서류 제출 불필요!!

☑ 교육지원 협력업체 모집 애로 해소!!

☑ 기존 상호협력 위탁교육 대비 3배수 이수실적 인정!!
(상반기 교육시 1.2배수 추가, 인정)!!

추가

▼ '법정윤리교육' ▼

- 종합건설업체(신청업체) 임직원
- 협력업체 임원

*총 8시간

- 건설공사 품질안전(2시간)
- 건산법(2시간), 계약법(1.5시간)
- 하도급법(1시간)
- 윤리경영(1.5시간)

- 대한건설협회 등
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관

- 오프라인 : 15만원

- 4대보험가입증명서,
재직증명서(임원확인용) 등
※우리협회 교육 이수시,
상호협력평가서류 제출시
등 서류 제출 불필요

- 교육인원 실적 **3배** 인정
(상반기 교육시 최대 **3.6배** 인정)

교육대상

교육과목

교육기관

교육비
(1인당)

신청서류

특이사항

▼ '상호협력 위탁교육' ▼

기존

- 협력업체 임직원

*총 8시간

- 건산법(1시간),
하도급법(1시간) 등

- (불특정 다수) 민간교육기관

- 오프라인 : 7만원
- 온 라 인 : 5만원

-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
※좌동

과정별 교육인원 인정 사례

※예시1

교육업체/인원	상호협력 위탁교육		법정윤리교육	
	인정 업체수	인정 인원수	인정 업체수	인정 인원수
종합업체 2인 이수시	-	-	2인×3배=6개사	2인×3배=6인
전문업체 임원 2인 이수시	1개사	2인	2인×3배=6개사	2인×3배=6인
1인이 동일 과정을 2번 이수시(중복인정 불가)	1개사	1인	1인×3배=3개	1인×3배=3인
전문업체 임원 1인이 상호협력 위탁교육 및 법정윤리교육을 모두 이수시(중복인정 가능)			(1개사)+(1개사×3배)=4개사 (1인)+(1인×3배)=4인	※업체수, 인원수 모두 4인 인정

※예시 2

총 협력업체가 100개사이며, 상반기 중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신청업체 임직원수가 10명이고,
하반기 중 상호협력위탁교육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인 경우

→ 36개사/인(=10X3배X1.2배) + 20개사/인(=20X1배) = 총 56개사/인 인정

교육 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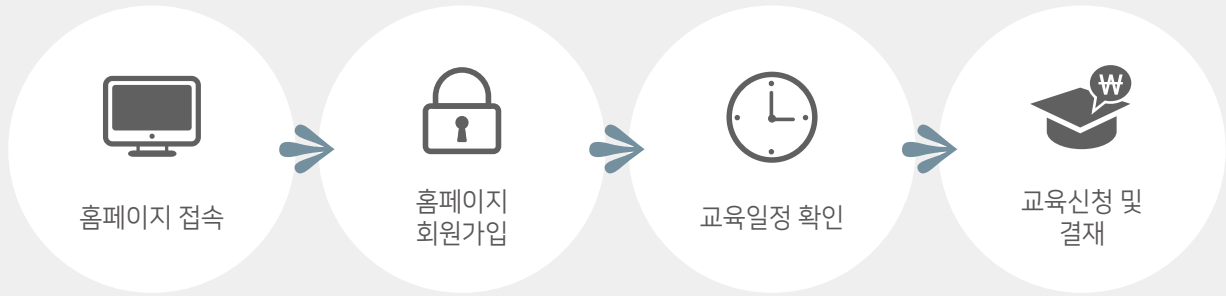


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(http://edu.cak.or.kr)
※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

02-3485-8304, 8454

교육 신청방법



직무교육 02-3485-83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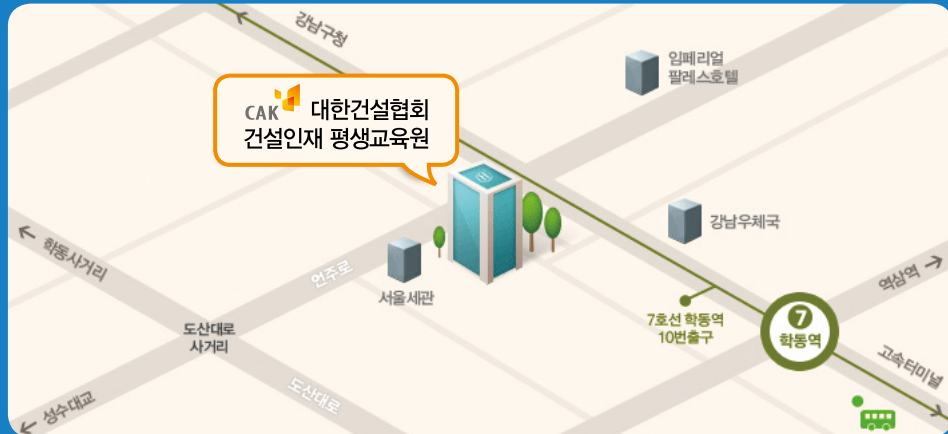
문의전화 상호협력 02-3485-8454

법정교육 02-3485-8307

홈페이지 <http://edu.cak.or.kr>

대표전화 1588-6912

오시는 길



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층